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0 - 12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06.2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2015-74호(2015.05.07.)사업시행인가로 고시된 장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105,163.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찬웅),
노원구 월계동 435-11, 3층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년 7월 8일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	분양	52,998.17	15	지하3층~지상33층	1,352	218,153.96
	임대	7,251.43			285	29,242.14
	소계	60,249.6			1,637	247,396.1
상가		701	2	지하1층~지상2층		2,972.8

나. 토지이용계획

총 계 (㎡)	획 지(㎡)				정비기반시설(㎡)				
	소 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 시설	종교 시설	소 계	도 로	공 원	녹지	공공 청사
105,163.9	61,422.6	60,249.6	701	472	43,741.3	16,629.3	22,782	2,565.3	1,764.7

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39㎡	46㎡	59㎡	84㎡	105㎡		
계	1,637	129	126	503	818	61	2,972.80	
조합원	616			312	244	60	2,972.80	
보류 시설	14			8	5	1		
일반 분양	722			153	569			
임대	285	129	126	30				

라.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 분	용 도 폐 지					신 설				
종 류	소 계	도 로	공공 공지	공원	공공 건물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공공청사
규모(㎡)	27,502	26,251	335	482	434	43,741.3	16,629.3	22,782	2,565.3	1,764.7

마.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이주기간 완료 후 일부철거 예정

※ 위 철거 예정시기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음

7.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02-2241-283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 - 87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의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 추가 (안 별표1)

- 신규 개관 도서관 : 2020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글빛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41-2612, FAX: 2241-6536, E-mail : sung101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을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할”을 “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할인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도서관의 명칭 중 성북길빛도서관 다음에 글빛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제2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공공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성북길빛도서관	성북구 송인로8길 52
	글빛도서관	성북구 길음로7길 20
작은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	-----		-----
2. 3. 삭제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
5.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		-----
제4조의2(구의 책무) ①·② (생략)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②	-----		-----

략)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등)

① -----

----- 면제할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감면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 각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② (생략)

제17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 분실 -----

-----.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

----- 운영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88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직임을 감안하여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재단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 변경시 구청장 ‘승인’을 ‘협의’로 변경 : 안제7조

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 : 안제8조, 안제9조

- 다.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의 순서 따라 직무대행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안제9조, 안제11조
- 라. 구청장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규정 삭제 : 안제17조
- 마. 기구·정원의 변동사항, 채용·면직·보수체계 등에 대해 구청장과 협의 규정
신설 : 안제18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 안 제8조, 안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41-2655, FAX: 2241-6536, E-mail
: chiwiss@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구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8조제7항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추천하는 자를”을 “추천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결쳐”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한차례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중 “이사장이”를 “대표이사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무상대부”를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정관) ① (생략)	제7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u>구청장의 승인</u> 을 얻어야 한다.	② ----- ----- <u>구청장과 협의</u> <u>하여야</u> -----.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u>상임이사</u>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 ----- <u>대표이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임이사</u> 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③ <u>대표이사</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u>추천하는 자</u> 를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 <u>추천을 받아</u> ----- ----- ----- -----.
⑥ <u>상임이사</u> 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u>대표이사</u> ----- -----.
⑦ <u>상임이사</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상임이사</u> 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u>상임이사</u> 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	⑦ <u>대표이사</u> ----- -----. --- <u>대표이사</u> ----- ----- <u>대표이사</u> ----- -----

0조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생략)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거쳐 -----
-----.

----- 한차례만 -----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직원의 임면) -----
-----대표
이사가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
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
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
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
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
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8조(감독 · 보고 · 감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 재
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 . -----

-----.

제18조(감독 · 보고 ·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
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
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90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9일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법률고문 명단은 비공개 정보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중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항으로 개선 의견을 받은 법률고문 위촉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 고문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고자 함.

다.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제한(안 제3조제2항)

나. 법률고문 위촉 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1인 이상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중 위촉 조항 수정(안 제4조제1항)

다.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241-3853, FAX : 2241-6571, E-mail :leslie@sb.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과 (이하 “구청장”이라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쟁송사 건**”을 “**쟁송사건**”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행중**”을 “**수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위촉 하는**”을 “**재위촉하는**”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또는 법률학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명 이상은 서울특별시법률고문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제5조 중 “**받고자할**”을 “**받고자 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열수**”를 “**열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만원이내**”를 “**7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 의**”를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만원 (부가세**”을 “**10만원(부가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직무) ① ----- 각 호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1. ----- 서 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u>쟁송사건</u> 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② ----- 각 호 ----- ----- ----- ----- ----- <u>쟁송사건</u> ----- -----.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생략)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연임</u> 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u>수행중인</u>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 --- <u>한차례만 연임</u> ---. ----- ----- <u>수행 중</u> ----- -----.
③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은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u>재위촉</u>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 만료 <u>15일전까지</u> 그 사실을 통	③ ----- ----- ----- <u>재위촉하는</u> ----- ----- --- <u>15일 전</u> -----

지한다.

제3조의2(특별고문)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1. (생략)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3. 4. (생략)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명 이상은 서울특별시법률고문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생략)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

-----.

제3조의2(특별고문) -----

-----.

1. (현행과 같음)
2. ----- 일정기간 동안 -----

3.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

----- 대한변호사협회-----
-----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 해촉할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4. -----

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 라. (생 략)

5. (생 략)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7만원이내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문임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월 각 20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자문 1회당 각 10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별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나. ~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5조(법률자문) -----

----- 받고자 할 -----

-----.

제6조(회의) ① -----

----- 열
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7만원 이내-----

-----.

제7조(고문임료 등) ① -----
-----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
-----.

② -----
----- 10만원(부가세-----

-. -----

도의 고문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901호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9일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중요행정심판 사건의 변호사 선임 근거와 수임료 지급기준을 마련
- 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변호사 선임 규정 제정
- 다. 소송심의회 개최시의 위원 수 개정

2. 주요내용

- 가. 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규정
및 심판비용 지급기준 마련 (안 제10조제5항, 제6항, 제28조제1호)
- 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제한 및 변호사 선임 지원 규정
마련 (안 제10조제4항5호, 안 제25조제5항)
- 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
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241-3853, FAX : 2241-6571, E-mail :leslie@sb.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제28조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행정소송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제4항 중 "9명"을 "11명 이내"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직무관련사건"을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으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한정한다) 의"를 "한정한다)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 ③ (생략)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u> " 제3조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u><신 설></u>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제28조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u><신 설></u>	⑥ 제5항의 경우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입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

⑤ (생략)

제25조(구상권 행사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27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소송주관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 ⑧ (생략)

제28조(중요소송 지정) 법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제27조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행정소송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구상권 행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1명 이내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요소송 지정) -----

-----.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

2. 3. (생략)

제30조(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 ③ (생략)

⑤ (생략)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 ② (생략)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천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같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3.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정한다)의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90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종일 돌봄 지원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2·제3조)

나.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안 제5조·6조)

- 다.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7조·제8조)
- 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마. 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바. 위원회 임기, 협의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14조)
- 사. 보험, 지도감독평가,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2241-2456, FAX: 2241-6529, E-mail : tagi72@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온종일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3.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8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

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따른다.

제10조(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of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평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결산) 돌봄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협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사

《발령 제 182호》

連番	姓 名	發 令 內 容	現 職	
			所 屬	職 級
1	박 덕 임	정릉지소 담당주사 겸임을 명함 (2020. 7. 1.~별도지시시까지)	보 건 지 소	지방간호주사
2	김 삼 성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 (건 축)
3	송 세 범	토지관리 담당주사 겸임을 명함 (2020. 7. 1.~별도지시시까지)	지 적 과	지방시설주사 (지 적)

(시행일자 : 2020.7.1.字.)

《발령 제 185호》

連番	姓 名	發 令 內 容	現 職	
			所 屬	職 級
1	최 용 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구의회사무국	지 방 별 정 직 7급상당(비서)
2	신 지 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구의회사무국	지 방 별 정 직 8급상당(비서)

(시행일자 : 2020.7.5.字.)

《발령 제186호》

連番	姓 名	發 令 內 容	現 職	
			所 屬	職 級
1	안 영 수	도시안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청 소 행 정 과	지방행정서기
2	김 홍 전	도시안전과 지원근무를 명함 (2020.07.06. ~ 별도지시시까지)	청 소 행 정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3	신 미 경	도시안전과 지원근무를 명함 (2020.07.06. ~ 별도지시시까지)	환 경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2020. 7. 6. 字.)

《발령 제18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백 종 남	정릉제2동 보건복지지원팀장 겸임을 해제함	행 정 국	지방행정주사
2	박 성 언	길음제1동 공공복지팀장 겸임을 해제함	돈 암 제 2 동	지방행정주사
3	송 인 재	보건복지지원팀장 겸임을 명함 (2020.07.01.~별도지시시까지)	정 령 제 2 동	지방행정주사
4	정 우 혁	공공복지팀장 겸임을 명함 (2020.07.01.~별도지시시까지)	길 음 제 1 동	지방행정주사

(2020. 7. 1. 字.)

《발령 제 188 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구 경 민	복 직 을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20.07.05. ~ 2021.07.04.)	행 정 국	지방행정서기
2	이 경 화	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20.07.05. ~ 2021.07.04.)	주민공동체과	지방행정서기

(발령일자 : 2020. 7. 5. 子)

《발령 제 189 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권 유 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질병)을 명함(연장) (2020.07.08.~2021.07.07.)	행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일자 : 2020. 7. 8. 子)

《발령 제 190 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김 현 진	정릉제2동 지원근무를 명함 (2020.7.3.~별도지시시까지)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서기
2	진 윤 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를 해제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행정국 교육지원과 근무를 명함	안 압 동	지방행정서기보시보

(2020. 7. 3. 字.)

《발령 제 192호》 복직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염 승 현	복 직 을 명 함 건설교통국 치수과 근무를 명함	행 정 국	지방시설서기 (토 목)

(2020. 7. 7. 字.).

《발령 제193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장 선 화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일자리경제과	지 방 한 시 임기제 ‘9호’

(발령일자 : 2020. 7. 8.字).

